

13

우편제출

답변서

사 건 2016재나35 기타(금전)
원 고 임그루
피 고 케이티노동조합

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재심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1.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심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1. 원고가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한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5. 10. 20. 선고 2014재나1072 사건입니다.
- 2. 그러나 위 재심대상판결의 이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미 4차례에 걸쳐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3.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또한 전혀 이유 없는 억지 주장
들입니다.

4.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시어,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6. 3. 25

피고 케이티 노동조합

위원장 정윤모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귀중